

2021년 12월

NFT 관련 주요 현안 (2)

김·장 법률사무소의 핀테크·가상자산팀에서는 최근 부각되는 NFT와 관련된 제반이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편에서는 NFT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I. 들어가며

NFT가 주목받게 된 사건으로,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에 대한 NFT가 고액에 거래된 사건이 있습니다. 게임과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미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거래하기 위한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운영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많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NFT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생성되는 일련의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이더리움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블록체인상에 NFT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큰 내에 담겨야 할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토큰 내에는 해당 NFT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제목이나 생성자·제작자 정보,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URL 등과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¹

실물 또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NFT가 발행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저작권법적

¹ NFT에 따라서는, 토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러한 데이터조차도 블록체인이 아닌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고, 블록체인상에는 해당 토큰의 ID와 토큰의 내용이 저장된 외부 저장소로 접근 가능한 하이퍼링크만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작권법에서 NFT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NFT는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라 규율될 것인바, 이하에서 NFT의 발행과 거래 및 NFT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NFT의 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블록체인상에서 가상자산인 코인을 새로이 발행하는 작업에 대해 채굴(m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대비하여, NFT를 비롯한 토큰을 새로이 발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주조(minting, '민팅')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²

NFT의 민팅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NFT를 작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어떤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규약에 따르는 NFT를 발행하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동작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NFT의 발행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값을 생성하며,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포함하는 토큰을 생성하고 이 토큰이 발행되었음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원저작물의 디지털화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대상이 디지털 저작물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³ 저작권 실무상으로는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작업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의 발행이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저작권자로부터 NFT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NFT 내 포함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내용이 실제 저작물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NFT의 발행 과정에서는 NFT 내에 포함될 메타데이터 및 URL 등을 마련하고 저장하는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처럼 메타데이터와 URL 등을 포함하여 민팅된 NFT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

² 엄격하게 법적인 정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특정한 가상자산만을 위하여 동작하는 메인넷(mainnet)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코인으로, 기존 존재하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블록체인상에서 동작하도록 작성된 가상자산을 토큰이라 부릅니다.

³ 물론 디지털화되지 않은 실물에 대해서 NFT를 발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실물과 NFT를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원저작물의 디지털화가 NFT의 발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것을 가지고 원저작물을 기초로 변형하여 새로이 창작한 저작물(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저장소로의 이동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이용 가능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NFT 플랫폼은 Interplanetary File System(IPFS)라는 이름의 분산형 파일 저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저장하고, 일부 플랫폼은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자체에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되기보다는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민팅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IPFS 또는 블록체인 등에 저장되는 과정에서는 원저작물의 복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송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1번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 단일 저작물에 대한 복수의 NFT 민팅

하나의 원저작물에 대해서 하나의 디지털화만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개의 NFT가 민팅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NFT는 그 자체로 “Non-Fungible”하므로, 각 NFT는 모두 유일한 것으로서 상호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다만, 원저작권자로부터 한 개의 NFT 발행을 허락 받은 자가 임의로 추가로 복수의 NFT를 발행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NFT 발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II. NFT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발행된 NFT에 대해서, 해당 NFT를 구현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사용하여, 대상 NFT가 다른 이에게 이전/양도되는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NFT의 거래가 그 대상인 원저작물 내지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원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거래까지 포함하는지, 즉 NFT 자체에 대해 원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FT는 원저작물 내지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NFT의 거래 그 자체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NFT의 거래 시에 NFT 그 자체, 즉 원저작물 내지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

이더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원저작물 내지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하는 효력을 갖도록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NFT의 거래 및 이전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함께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NFT의 거래와 그에 따른 실물자산의 이전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권의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비용과 데이터 용량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은 아니나, 블록체인상에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저작물 자체를 기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는 달리 NFT의 이전 그 자체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IV. NFT의 라이프사이클 및 주체에 따른 이슈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NFT의 라이프사이클을 발행과 유통 단계로 나누어 주체별로 저작권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의 발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원저작자가 직접 블록체인상에 NFT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지 않는 이상, NFT 거래소나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구현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NFT를 생성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NFT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약관 또는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와의 계약의 내용에서 저작물의 NFT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사항, 예를 들면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복제 권한을 NFT의 발행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수탁에 의해 NFT를 발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용허락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NFT의 유통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NFT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게 되거나, 또는 NFT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소유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 NFT가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상에 생성 및 이후의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초 생성이 NFT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원저작자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NFT를 구매하는 것 그 자체가 저작권의 양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NFT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NFT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양도를 포함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V. 결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데이터의 집합이 블록체 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행위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NFT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실제 NFT의 구조와 활용 방법이나 기술적인 발전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준영

02-3703-1824
joonyoung.kim@kimchang.com

이정민

02-3703-1671
jungmin.lee@kimchang.com

김계정

02-3703-4550
gyejeong.kim@kimchang.com

이춘수

02-3703-1598
cslee1@kimchang.com

이상현

02-2122-3504
shlee5@kimchang.com

박철현

02-6488-4089
chpark2@kimchang.com